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4. 1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4. 10
- 다. 상 정 일 자 : '97. 4. 17
(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재무과장 정 부 응
- 나. 제안사유
 - 화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조문중 관련 조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키 위함.
- 다. 주요내용
 - 제2조중 "운영"를 "운용"으로 제3조중 "군유"를 "공유"로 개정
 - 제6조 "인감 증명서와 각서받은후"를 삭제하고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개정
 - 제22조중 "8호 공장용지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신설
 - 제23조 제6항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
 - 제24조 제4항중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개정
 - 제37조중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제39조중 "지방자치단체공업단지"를 "군 산업단지"로 개정
 - 제48조를 삭제하고 제50조중 "조례는"을 "조례에서"로 개정
 - 제60조중 "사용자의 과실로"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로 개정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조례 개정안은 관리조례조문중 관련사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끝.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37
----------	---------

제출 년월일 : 1997. 4. 10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제2조중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
- 나. 조례제3조중 "군유"을 "공유"으로 개정
- 다. 조례제6조중 "인감증명서와 각서받은 후"를 삭제하고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개정
- 라. 조례제22조중 "8호 공장용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설
- 마. 조례제23조 제6항중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
- 바. 조례제24조 제4항중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개정
- 사. 조례제37조중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개정
- 아. 조례제39조중 "지방자치단체, 공업단지"를 "군, 산업단지"로 개정
- 자. 조례제48조를 삭제
- 차. 조례제50조중 "조례는"을 "조례에서"로 개정
- 카. 조례제60조중 "사용자의 과실로"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로 개정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3조중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중 "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한다.

제24조 제4항중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중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한다.

제39조 2의 제1호 및 제3호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고 제39조 2의 제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60조중 "사용자의 과실로"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로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신.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u>운영</u>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u>공유재산</u>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 ②. (생략)</p> <p>③ 보상금은 <u>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u>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1. <u>영 제107조에</u> 해당하는 신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생략)</p> <p>⑤ (생략)</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1. ~ 7. (생략)</p>	<p>제2조 (관리책임) ① - - - - - - - - - - <u>운영</u>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 - - - - - - - - - - - - - - <u>공유재산</u> - - - - - - - - - -</p> <p>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1. <u>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u> - - - - - - - - - - -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1. ~ 7. (현행과 같음)</p>

신.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p> <p>②. ~ ⑤. (생략)</p> <p>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제24조 (토석채취료 등)</p> <p>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p>	<p>8. <u>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u></p> <p>제24조 (토석채취료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 - - - -</p>

신.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u>지방의회</u>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p> <p>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u>지방자치단체</u>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p>	<p><u>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u> - - - - -</p> <p>- - - - -</p> <p>-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p> <p>- - - - -</p> <p>- - - - -</p> <p>- - <u>군의회</u> - - - - -</p> <p>- - - - -</p> <p>-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 -</p> <p>- - - - -</p> <p>- - - - -</p> <p>- - - - -</p> <p>1. - - - - - <u>군</u></p> <p>- - - - -</p> <p>- - - - -</p> <p>- - - - -</p>

신.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200㎡이하, 시지역에서는 3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p>
<p>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u>공업단지</u>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p> <p><u>산업단지</u> -----</p>
<p>3. 일단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u>지방자치단체</u>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p>	<p>3. -----</p> <p>----- <u>군</u> -----</p>

신.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p>	- - - - -	- - - - -
	<p>제48조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u>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삭 제)	
	<p>제50조 (정의) 이 <u>조례</u>는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실.과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p>	제50조 (정의) - - <u>조례에서</u> - - - -	- - - - -
	<p>제6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u>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u>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p>	제60조 (변상조치) - - - - - - - - <u>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u> - -	- - - - -

신. 구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